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세칙

감사실 감사부

전부개정 2023.12.27. 세칙 제225호

개정 2024.09.20. 세칙 제237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감사규정」 제54조에 따라 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잘못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의사항)** 이 세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대상 업무의 범위)** ① 이 세칙은 「감사규정」에 따라 상임감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세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③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6조(면책제도 안내)** 상임감사는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감사대상부서(본부 포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면책)**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한 업무 중 실지감사에서 감사자가 책임여부를 조사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감사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 회의를 통해 면책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③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감사 마감회의 전까지 면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다.

④ 감사반장은 검토결과를 상임감사에게 보고하고, 상임감사는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⑤ 감사반장은 면책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심사검토서’를

감사대상부서(본부 포함)의 장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현장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제8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감사반장은 현장면책 결과를 감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현장면책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에 의한 면책)**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자는 면책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결과 확정 전까지 상임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① 제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규정」 제40조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면책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상임감사에게 보고하고, 상임감사는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면책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장은 면책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심사검토서’를 감사대상부서(본부 포함)의 장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권에 의한 면책)** ① 상임감사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반장에게 직권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경우 제7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삭제** <2024.9.20.>

**제12조(보칙)** ① 이 세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여부 및 감사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감사규정」과 「감사규정 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2. 27.>

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20.>

이 세칙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면책심사 신청 안내**

○○감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감사를 받은 부서(본부 포함)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을 것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기준**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별지 제2호서식]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이유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금품 수수 여부		

「감사규정」 제54조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세칙」 제8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본부)명

직위

성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귀중

[별지 제3호서식]

### 현장면책 신청서

일련번호	소속부서 (담당자)	제목	감사시 논의된 지적 사항	면책사유

작성자 : 소속부서      직위(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검토서**

감 사 대 상 부 서 명		감 사 연 월 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처	분 종 류 ( 안 )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을 것	
검 토 의 견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을 것	
	총 합 의 견	